



캘리포니아주 권익보호 및 옹호 시스템

## 재활국 서비스

---

2015 년 11 월, 간행물 #5401.03 - Korean

### 1. 재활국 서비스의 자격대상자는 누구이며 재활국은 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활국 (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에서 내린 신청인의 직업 재활 서비스에 대한 자격 대상 판단은 다음 요건만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 (1) 반드시 DOR 의 직원은 아니지만 유자격자가 해당 신청인에게 육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내린 판단. “장애인”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이란 용어는 신청인에게 고용에 대한 상당한 장애가 되는 육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해당 신청인이 직업 재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9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 Code) § 705(20)(A)(i)-(ii); 캘리포니아 복지 및 제도 법전 (Cal. Welf. & Inst. Code) § 19151(a)(1)-(2); 및 tit. 9 캘리포니아 법규집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7017(a)(1)-(3);
- (2) 반드시 DOR 의 직원일 필요는 없는 유자격자가 해당 신청인에게 고용에 대한 상당한 장애를 구성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육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내린 판단

(3) 재활 상담사 (Rehabilitation Counselor) 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유 강점, 리소스, 우선순위, 관심사항, 능력, 역량, 기호 및 정보에 입각한 선택과 일치하도록 일자리를 확보, 유지 또는 복원하게 준비시켜주는 직업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내린 판단 그리고

(4) 신청인이 통합 설정에서 고용의 관점으로 볼 때 직업 재활 서비스의 제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추정.

9 C.C.R. § 7062(a). 귀하가 사회보장 보조금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또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의 수령인 또는 수혜자일 경우, 귀하는 서비스의 자격 대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29 U.S.C. § 722(a)(3)(A)(i)-(ii); 34 C.F.R. § 361.42(a)(3)(i)(A)-(B). 하지만, 귀하의 장애가 심각하여 DOR 서비스가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DOR 이 “해당 개인의 장애의 심각성 때문에 직업 재활 서비스로부터 일자리 확보의 관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9 U.S.C. § 722(a)(2)(A); 34 C.F.R. § 361.42(a)(2); 복지 및 제도 법전 (W.I.C.,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19103(b) 및 9 C.C.R. § 7062(c).

자격대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재활국 서비스에 대한 자격대상 요약 (Eligibility f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ervices Fact Sheet), 간행물 # F06601 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6601.pdf>

## **2. 본인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경우 DOR에서는 본인의 자격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격 대상 판단 과정에서 재활 상담사는 평가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에서 준비한 기록들을 고려하여 귀하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자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가 귀하를 진단하거나 치료했던 유자격 전문가의 진술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상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3. 고용에 대한 상당한 장애로 간주되는 장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고용에 대한 상당한 장애” (“Substantial Impediment to Employment”) 는 육체 또는 정신적 장애 (부수적 의학, 심리, 직업, 교육, 커뮤니케이션, 기타 관련 요인을 고려) 로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일치하는 일자리를 준비, 시작, 참여 또는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9 C.C.R. § 7027.

일시적인 장애는 고용에 대한 상당한 장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Paegle v. DOI*, 813 F. Supp. 61 (D.D.C. 1993) 참조.

## **4. 내 자격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OR 이 할 수 있는 평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담사는 개인의 자격 대상 여부와 직업 재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작업 추적 평가 등의 종합적인 평가에 참여를 요청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29 U.S.C. § 705(2)(A)-(D). 귀하의 고용

결과를 판단하고 DOR 이 제공할 직업 재활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상담사는 다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성, 기호, 대인 관계 기술, 지능 및 관련 기능적 역량, 교육 성과, 직업 경험, 직업 적성, 개인 및 사회 적응, 고용 기회 그리고 고용 및 재활 필요에 영향을 주는 의학, 정신의학, 심리 및 기타 관련 직업, 교육, 문화, 사회, 레크리에이션, 환경 요인

29 U.S.C. § 705(2)(B)(iii).

이것은 완전한 목록이 아닙니다. 법에 의거 DOR 은 평가를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귀하의 직업 재활 필요에 대한 적합한 평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귀하의 재활 필요를 식별하고 고용을 위한 개별 계획 (IPE,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DOR 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존 정보와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9 C.C.R. § 7001.5 (c).

## **5.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DOR 은 가능한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귀하의 필요와 정보에 입각한 선택에 일치하는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9 C.C.R. § 7062. 이 평가에는 DOC 가 제공하는 적합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는 지원 기술 장치 및 서비스와 귀하의 재활 필요를 수용하는 개인적 지원이 있습니다. 9 C.C.R. §§ 7014(c) 및 7029.1(b)(4).

또한, 귀하는 직업 재활 프로세스 중에 합리적인 편의 사항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의 타이틀

II 와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 504 조에 의거, DOR 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연방재정지원의 수령기관은 장애가 있는 신청인 및 의뢰인이 D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실무 및 절차에 합리적인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DOR 로부터 평가 및/또는 편의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한다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은 기록을 위해 보관하도록 권장합니다.

## 6. DOR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다음은 통해 신청합니다.

- 지역 DOR 사무소 방문
- 온라인으로 신청 <https://www.dor.ca.gov/Apply-4-Services.html>
- DOR 사무소에 전화하여 신청 요청 또는
- 지역 DOR 사무소에 서면으로 서비스 요청

지역 DOR 사무소의 전화번호와 위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or.ca.gov/dor-locations/index.asp>

서명한 신청서 사본을 보관하거나 또는 날짜를 포함하여 서비스 요청을 문서화하도록 권장합니다.

## 7. DOR 이 내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DOR 은 신청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자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9 U.S.C. § 722(a)(6); 34 C.F.R. §

361.41(b)(1); 9 C.C.R. § 7060(a). 다음과 같은 경우 DOR 의 처리에 60 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DOR 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 귀하가 서면으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자격 대상 판단을 위해 시범 직업 경험을 통해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또는
- 평가 연장이 필요하며 60 일 이내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4 C.F.R. § 361.41(b)(1)(i) 및 (ii); 9 C.C.R. § 7060(a)(1)-(2).

귀하가 자격 대상 판단 일정을 연장하려는 DOR 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DOR 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 C.C.R. § 7060(b).

## **8. 서비스를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주에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합니까?**

연방법에 의거 DOR 은 캘리포니아의 거주 기간을 자격대상에 대한 요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4 C.F.R. § 361.42(c). 캘리포니아 규정에서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거주 요건이 없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9 C.C.R. § 7060(c)(1).

## 9. 연령, 인종, 성별, 종교, 장애의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DOR 은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교리, 피부색, 조상, 출신국가, 성적지향, 혼인여부, 의학적 상태, 육체나 정신적 장애를 서비스에 대한 자격 대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4 C.F.R. § 361.42(c)(2); 9 C.C.R. § 7060(c)(2).

## 10.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각 개인의 직업 재활 필요에 적합하며 각 개인의 정보에 입각한 선택에 일치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한 없이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서비스에 대한 자격 대상과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 b) 직업 재활 필요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 c) 직업 재활 상담 및 지도, 정보 및 지원 서비스 포함
- d)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인과 자격대상 개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천 및 기타 서비스
- e) 육체 및 정신적 복원 서비스, DOR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f) 직업 및 기타 훈련 서비스
- g) 직업 재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운송 서비스
- h) 통역사 서비스
- i) 리더 서비스, 재활 교습 서비스, 시각장애인에 대한 방향 및 이동성 서비스

- j) 직업 관련 서비스
- k) 고용 지원 서비스
- l) 고용 후 서비스
- m) 직업 라이선스, 도구 및 장비
- n) 재활 기술
- o) 이전 서비스
- p) 고용 결과로 자영업이나 텔레커뮤팅 또는 소기업체 운영을 원하는 자격대상 개인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기타 상담 서비스
- q) 장애인이 고용 결과를 얻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물품 및 서비스

9 C.C.R. § 7149.

## 11. 이러한 서비스는 유료입니까?

귀하에게 소득이 있다면, 일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4 C.F.R. § 361.54(b)(1).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OR 에서 귀하의 월 소득, 유동자산 및 의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9 C.C.R. § 7192(b).

귀하가 서비스 비용 분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DOR 은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 C.C.R. § 7190(b).



## **12.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다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귀하가 SSI, SSDI, 주정부 지원금 (SSP, State Supplemental Payment) 또는 공공 지원금 (Public Assistance) 을 받는다면, 서비스 비용 지불로부터 면제됩니다. 9 C.C.R. § 7191(a).

## **13. 비용 분담에 참여할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연방 규정에 의거, DOR 서비스에 대한 지불 참여 비용은 필요한 서비스를 거부할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34 C.F.R. § 361.54(b)(2)(iv)(C).

## **14. 고용을 위한 개별 계획이란?**

고용을 위한 개별 계획 (IPE) 은 의뢰인과 그의 DOR 상담사 간에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IPE 는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고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장 평가를 수행하도록 고안된 행동 계획입니다. 9 C.C.R.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7131.

IPE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을 위한 개별 계획 정보지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Fact Sheet), 간행물 # F06801 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6801.pdf>

## **15. IPE 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합니까?**

IPE 에는 귀하의 고용 결과, DOR 이 제공하는 특정 직업 재활 서비스 및 DOR 이 이러한 서비스를 귀하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법에 의거 귀하의 IPE 에는 특정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PE 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DOR 이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자격대상 여부를 판단한 근거
- 귀하의 중간 목표
- 귀하의 장기 목표
- 중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일정
- DOR 이 제공할 특정 서비스
- 각 서비스의 시작 시기와 제공 기간
- 귀하의 진도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의 일정과 방법 그리고
- 목적에 대한 귀하의 견해

다음에서 전반적인 내용 참조: 34 C.F.R. § 361.46; C.C.R. 9 § 7131.

IPE 에는 또한 고용 결과 달성에 관련된 책임, 서비스 비용 지불에 대한 귀하의 참여 범위, 유사한 혜택 신청 및 활용에 대한 귀하의 책임 등과 같은 귀하의 책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 361.46(a)(6)(ii). 또한 IPE 에는 귀하를 지원하는 재할국 및 다른 기관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 361.46(a)(6)(i) 및 (iii).

## **16. IPE 기술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까?**

네, IPE 는 상담사와 의뢰인이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W.I.C. § 19104(b)(2). 귀하 자신이 고용 결과를 선택하므로 귀하의 IPE 를 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4 C.F.R. §§ 361.45(b)(2) & 361.46(a)(1). 귀하의 IPE 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족을 표명하고 행정 또는 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전반적인 내용 참조: 29 U.S.C. § 722(c); 9 C.C.R. §§ 7350-7361.

## **17. 다른 출처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DOR 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네. 연방법에 의거, DOR 은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 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는 곧 다른 제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DOR 이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DOR 상담사는 유사한 혜택 검토를 통해 다른 출처로부터 이용 가능한 유사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W.I.C. § 19150(a)(13). 만약 유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상담사는 의뢰인이 DOR 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한 혜택을 거부합니다. 9 C.C.R. § 7196(c)( 1 ).

유사한 혜택에 대해 의뢰인이 자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DOR 상담사는 다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을 거부한 기관에 연락하여 무자격성 확인
- 확인 문서화 그리고
- DOR 의 서비스 승인.

9 C.C.R. § 7196 (d)(1)(A)-(C).

만약 의뢰인이 받는 유사한 혜택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축소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상담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무자격성 확인
- 무자격성 문서화
- 의뢰인과 상황 평가
- 축소되거나 종료된 서비스에 대해 DOR 로부터 서비스 승인 그리고
- 고용을 위한 개별 계획 수정.

9 C.C.R. § 7196 (d)(2)(A)-(C).

## **18. DOR 이 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DOR 은 직업 재활 필요와 귀하의 고용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판단합니다. 9 C.C.R. §7128. DOR 에서 귀하의 장애를 근거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그리고/또는 귀하의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DOR 에서 귀하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DOR 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 32-38 참조).

## **19. 저는 자영업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DOR 이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까?**

DOR 은 제안된 자영업 환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자영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격 대상 개인의 선택을 지원합니다. 9 C.C.R. §

7136.6(a). 자영업 환경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영업 환경이 해당 개인의 강점, 리소스, 우선순위, 관심사항, 능력, 역량, 기호 및 정보에 입각한 선택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자영업을 하는 사업이 12 개월 이내에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타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 해당 개인이 해당 사업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C.C.R. § 7136.6(b)(1)-(3).

## **20. IPE 는 얼마나 자주 검토 됩니까?**

매년 상담사와 함께 IPE 를 공식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29 U.S.C. § 722(b)(2)(E)(i); 34 C.F.R. § 361.45(d)(5); 9 C.C.R. § 7133(a). 검토는 작년에 발생한 변경 사항을 고려할 기회입니다. 이 검토 과정 중에, 귀하의 진척 사항을 문서화하고 귀하의 IPE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의 의학적 상태가 변경되면 중간 목표를 변경하거나 목표 달성에 대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9 C.C.R. § 7133.

## **21. IPE 가 변경되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DOR 상담사와 함께 IPE 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9 U.S.C. § 722(b)(2)(E)(ii); 34 C.F.R. § 361.45(d)(6); 9 C.C.R. § 7130(a)(6). IPE 에

대한 수정은 귀하가 이에 동의하고 새로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4 C.F.R. § 361.45(d)(7).

## **22.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티켓 투 워크 (Ticket to Work)' 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발급하는 티켓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용 서비스, 직업 재활 서비스 및 기타 DOR 이나 귀하가 선택한 다른 고용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기타 지원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3. 고용 네트워크란 무엇입니까?**

고용 네트워크는 (Employment Network) 귀하의 티켓을 접수하고 귀하가 고용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인된 공공 또는 민간 고용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이 서비스에는 교육, 고용 상담, 일자리 찾기 기량 준비 및 일자리 배치 등이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현지 인증 고용 네트워크의 목록을 보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866-968-7842 또는 1-866-833-2968 (TTY/TDD), 또는 다음 사이트 방문:<http://www.yourtickettowork.com>

## **24. 현재 재활국과 협조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상담사가 고용을 위한 개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귀하의 티켓을 재활국에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티켓을 DOR 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 25. 티켓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처벌 받습니까?

아닙니다, 티켓을 DOR 에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26. 내 기록 사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연방법에 의거, 재활국은 신청인 또는 자격대상 개인이 서면 요청할 경우 해당 신청인 또는 자격대상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4 C.F.R. § 361.38(c)(1). 캘리포니아 규정에 의거, 신청인 또는 의뢰인은 요청에 따라 자신의 기록을 재활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9 C.C.R. §7141(a).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에 대해 서면 요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습니다. 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9 C.C.R. § 7141.

귀하에게는 IPE 의 완전한 원문 그대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9 U.S.C. § 722(b)(2)(D). 사실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체 케이스 기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질문 27 을 참조하십시오. 9 C.C.R. § 7141(a).

DOR 로부터 기록을 확보하는 것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재활국 기록 요청 정보지 (Request f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OR] Records Fact Sheet), 간행물# 553301 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3301.pdf>

## **27. DOR 에서 기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DOR 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일부 경우에 DOR 에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DOR 이 해당 정보가 “개인에게 해로울 수도 있음” (“may be harmful to the individual”) 이라고 판단하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신청인이나 개인이 제 3자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 C.F.R. § 361.38(c)(2); 9 C.C.R. § 7141(c).

## **28. 본인의 기록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귀하의 DOR 상담사에게 귀하의 기록을 번역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상담사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당 기록을 번역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9 C.C.R. § 7141(b).

## **29. 내 서비스 기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기록에 나타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C.C.R. § 7141.5 (c). 만약 귀하의 요청에 따라 DOR 이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수정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34 C.F.R. § 361.38(c)(4); 9 C.C.R. § 7141.5(e).

## **30. DOR 상담사와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당 문제를 상담사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마도 상담사의 상사나 팀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의 상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상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역 관리자 (District Administrator) 에게 행정적 검토 (Administrative Review)



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는 청원 과정에서의 선택적 단계이며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적 검토에 대한 요청을 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면, 결정에 대해 청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 (Fair Hearing)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행정적 검토 결정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DR107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 요청 양식 (DR107 Request for Mediation and/or Fair Hearing form) 을 작성함으로써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9 C.C.R. § 7353(f).

청원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재활국 청원 옵션 및 프로세스 정보지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ppeals Options & Process Fact Sheet), 간행물# 553001 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3001.pdf>

귀하의 의뢰인 지원 프로그램 (CAP, Client Assistance Program) 권리보호 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AP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질문 36 과 37 을 참조하십시오.) CAP 권리보호 사무소에서 DOR 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31.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수화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언어 또는 귀하가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특정한 요청을 하면, DOR 은 귀하의 언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통보 및 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W.I.C. § 19013.5(a)-(b) 및 9 C.C.R. § 7352(a).

### **32. 행정적 검토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정적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해당 결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 귀하가 제안하는 조치

9 C.C.R. §§ 7353(a)(2) 및 (3).

DOR 은 귀하가 행정적 검토를 요청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 대상인 문제와 관련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9 C.C.R § 7353(f).

### **33.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DOR 에서 행정적 검토 중에 지원을 제공합니까?**

네. 행정적 검토 시 통역사와 리더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 요청은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C.C.R. 9 § 7353(c). 언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역사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통보와 결정문을 받고 싶으면, 이에 대해서도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34. 행정적 검토 출석을 위한 왕복 운송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행정적 검토 출석을 위한 왕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DOR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C.C.R. § 7353(d).

### **35. 행정적 검토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요. 행정적 검토는 선택사항입니다. 바로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C.C.R. § 7351(c).

### **36. 중재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요. 중재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34 C.F.R. § 361.57(d)(2)(i). 귀하와 DOR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귀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안이 유지되는 절차입니다. 행정적 검토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중재로 인해 공정 심의회를 요청할 권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9 C.C.R. § 7353.6(b) 34 C.F.R. § 361.57(d)(2)(ii).

결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또는 귀하가 행정적 검토에 참여한 경우, 행정적 검토 결정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DOR 의 결정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대한 요청은 지역 DOR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DR107 중재 및/또는 공정 심의회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9 C.C.R. §§ 7353(f) 및 7353.6(a)(1)-(2).

만약 DOR 에서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중재는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5 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행됩니다. 9 C.C.R. § 7353.6(b)-(c); 34 C.F.R. § 361.57(d).

귀하의 편의를 위해, 견본 DOR 중재 요청 양식을 다음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dor.ca.gov/Executive/Mediation.html>

### **37. 공정 심의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DOR 에 공정 심의회를 요청하여 조치 또는 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 심의회에 대한 요청은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조치 또는 미조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9 C.C.R. § 7354(a). 귀하가 행정적 검토에 참여했다면, 행정적 검토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9 C.C.R. § 7353(f). 귀하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의회가 개최됩니다. 9 C.C.R. § 7354( b).

편의를 위해, DOR 공정 심의회 요청 양식 견본을 다음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ttp://www.dor.ca.gov/Appeals/index.html>

공정 심의회 준비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직업 재활 심의회를 준비하는 방법*, 간행물# 553201: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3201.pdf>

### **38.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OR 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정적 검토 결정일 또는 행정 심의회 사무소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가 결정할 때까지, DOR 에서 IPE 하에 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보류, 축소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29 U.S.C. § 722(c)(7); 34 C.F.R. § 361.57(b)(4); 9 C.C.R. § 7351(e).

### 39. 의뢰인 지원 프로그램 (CAP) 이란 무엇입니까?

의뢰인 지원 프로그램 은 1973 년 재활법에 의거 시행되는 연방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29 U.S.C. 701, *이하 참조*. CAP 는 DOR 의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포함하는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CAP 권리보호 사무소는 귀하와 DOR 상담사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거나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적절한 시정을 추구할 때 직업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를 대신하여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전반적인 내용 참조: 29 U.S.C. § 732.

CAP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about/cap.html>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의 의뢰인 지원 프로그램 (CAP) 에 연락하려면 1-800-776-5746 에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자금 지원처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을 방문하십시오.